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9월 15일, 이학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1년 9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11.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2.9.5.)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9.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학영의원)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중전의 유연탄을 활용한 석탄열병합발전방식에서 친환경적인 LNG나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복합화력발전은 특성상 지역에 필요한 열공급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제92조의2제1항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 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인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높이려는 것임.

현행 제92조의2제1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 기준(지역냉난방사업: 15만kW,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30만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받은 특정한 구역 내에서 자체 열병합발전기 및 배전설비를 갖추고 구역 내 고객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동 규정은 2003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전력계통의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일정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음.

이후 2019년 7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때 ‘분산형 전원’의 정의규정도 신설되었는데, 동법 시행규칙은 분산형 전원에 해당하는 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50만킬로와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상 분산형 전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기존의 기준인 30만킬로와트가 당시 구역전기사업자 의제제도 도입 시점의 용량을 토대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 증가 등 변화된 환경과 최근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

맞는 용량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그리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2021.10.18.)에서는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의 석탄→LNG 발전 전환이 제시되었는데, LNG/수소 등을 활용한 복합화력발전은 열·전기의 비율 중 전기 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공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하려면 전기발전의 용량이 더 커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따라서 기존의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석탄 → LNG)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인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이 높아진다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구역전기 의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 확대 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친환경 연료전환 가속화가 기대되고, 그간의 발전설비 효율 확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용량 상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 수용성, 설비규모 적정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한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9.5.)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
신 대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